

교역안전 제고를 위한 국제 수출통관제도의 동향 및 시사점

2014. 12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 성 훈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미 영 관세사

노 영 예 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제도 현황	9
1. 수출통관 절차	9
2. 수출통관제도 변천	12
3. 우리나라의 불법수출 현황	17
가. 불법수출 관리방법	17
나. 불법수출 현황	23
III. 주요국의 수출통관제도	27
1.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SAFE Framework)	27
가. 구성	27
나. 수출관리 표준	31
2. 미국	32
가. 수출통관 절차 개요	32
나. 수출통관 관련 제도	36
다. 수출통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37
3. 호주	39
가. 수출통관 절차 개요	39
나. 수출통관 관련 제도	42
다. 수출통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42
4. 일본	44
가. 수출통관 절차 개요	44

나. 수출통관 관련 제도.....	49
다. 수출통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50
5. 캐나다.....	51
가. 수출통관 절차 개요.....	51
나. 수출통관 관련 제도.....	55
다. 수출통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56
6. 소결.....	58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2
참고문헌.....	64

표목차

〈표 II-1〉 수출통관제도 변천 요약.....	16
〈표 II-2〉 관세·부정 무역 사범 단속실적.....	18
〈표 II-3〉 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 비교.....	21
〈표 II-4〉 수출 관련 관세범죄.....	22
〈표 II-5〉 수출검사 결과내용 및 적발점수.....	23
〈표 II-6〉 중고차량 밀수출 적발실적.....	26
〈표 III-1〉 SAFE Framework 관세당국 간 협력 표준.....	29
〈표 III-2〉 SAFE Framework 관세당국과 민간 간 협력 표준.....	30
〈표 III-3〉 수출제도 비교.....	59
〈표 III-4〉 관세법 처벌 규정 비교.....	61

그림목차

[그림 Ⅱ-1] 수출통관 절차	11
[그림 Ⅱ-2] 적재지 검사 흐름도	19
[그림 Ⅱ-3] 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 흐름 비교	21
[그림 Ⅲ-1] 일본의 수출 절차	47

I. 서론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속 수출통관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수출통관제도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관세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 보세구역 장치의무 폐지, 보세운송제도 폐지, 수출신고면허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등이 수출규제 완화정책에 속함

- 2001년 9·11 테러 이후 WCO에서 국경안전에 대한 세관의 노력을 위해 2005년 'SAFE Framework'를 승인한 이래, 교역안전과 무역원활화의 균형을 강조하는 국제무역기조가 확산되어 왔음
 - SAFE Framework이란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Framework을 의미함
 - SAFE Framework는 (1) 수출입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통합표준 정립과 (2) 세관과 세관/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 추진, 그리고 (3) 민간 자율심사를 위한 AEO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무역 흐름에 따라 신속통관체제를 구축하고 수출규제 완화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되,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변화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2004년에 도입된 적재 전 검사제도 도입을 들 수 있음
 - 이 적재 전 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은 불법수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역안전을 기하기 위함임

- 적재 전 검사제도 도입 등 교역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량,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 등의 밀수출 등 불법수출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속통관이라는 무역기조는 유지하되 수출법규 준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주요국의 수출통관제도를 살펴보고, 이 가운데 특히 수출품목에 대한 물품검사방법, 불법수출 단속을 위한 사후관리제도 등을 조사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제도와 신속 수출통관체제 구축 및 제도 정비 연혁을 살펴보고, 교역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불법수출 현황을 분석함
 - 제Ⅲ장에서는 WCO의 국제규범상 수출관리제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국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의 전반적인 수출통관 절차와 수출물품검사 방법, 불법수출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향후 수출통관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우리나라 수출통관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함

II.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제도 현황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통관제도의 변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출통관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불법수출 현황과 사례를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 수출통관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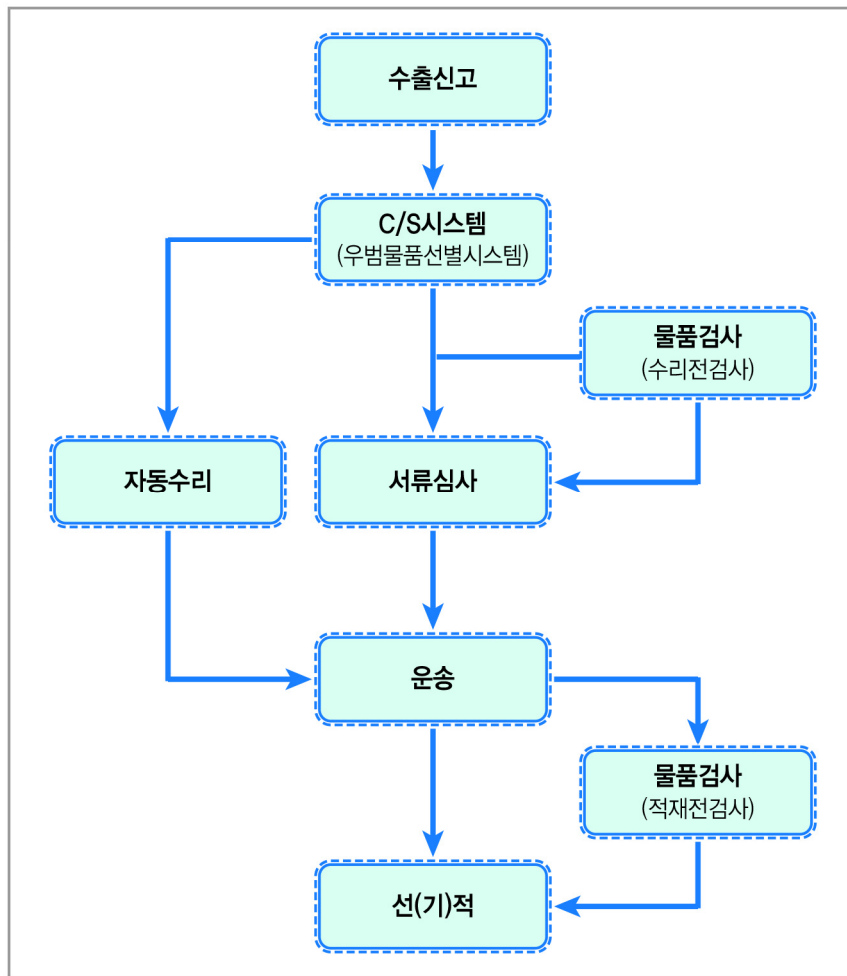
1. 수출통관 절차

- 우리나라의 수출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의 화주 또는 대리인의 수출신고, 세관의 심사 또는 검사 후 수출신고 수리, 화물 적재의 순서로 이루어짐
-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출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서, 송품장 등을 전자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함
 -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번호가 부여되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절차를 거쳐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 수출신고서, 송품장, 필요한 경우 개별법령별 요건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시스템에 의한 자동수리,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후 수리, 그리고 검사 후 수리로 나누어지며, 심사 또는 검사대상 화물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세관 심사 없이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즉시 신고 수리됨
- 심사는 (1) 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수출요건 확인대상 물품의 품목 분류 적정 여부, (3) 수출요건 구비 여부, (4) 원산지 표시, (5)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의 확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심사대상 화물의 수출신고서는 심사 후에 수리됨
-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이 원칙이나, 수출 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함
 - 여기서 물품검사란, 수출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출신고 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 수리 후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 수출물품,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신고지 검사’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적재지 검사’가 있음
 - 신고지 검사를 완료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봉인조치를 하거나 보세운송을 통하여 적재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도록 할 수 있음
 - 물품검사가 완료되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적재 목적 이외의 사유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때 물품검사를 다시 할 수 있음
-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검사할 수 있음
 - 부정수출 또는 부정환급 등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 물품의 성질,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출신고서를 수리한 때에 세관에서는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함

- 이때, 수출화주는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등을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그림 II-1] 수출통관 절차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sessionId=HJ1JJBLZCFZGF0nSvZQ0FWkyMzQSy1ZxyZrmTBlnRhq0njrG1Yvw!179915862?contentId=CONTENT_000000000050&layoutMenuNo=39, 2015. 3. 3.

2. 수출통관제도 변천

-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제도는 「관세법」,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법령과 「수출물품 선별검사 시행세칙」 등의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음
- 초기 수출통관제도를 살펴보면, 1949년 11월 법률 제67호로 공포되어 시행된 「신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해 서류심사와 검사대상 품목에 대해 현품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통관이 이루어졌음
- 1970년대부터 수출통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생략물품 확대, 수출물품 검사 임의제 등 수출물품검사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1987년에 이르러서는 「수출통관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검사 생략을 원칙으로 함
 - 1978년 12월 법률 제3109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 수출물품검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였음
 - 1981년 1월 기존의 전량검사에서 전품검사로 검사를 임의화하고, 전량을 세관검사장에서 반입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세관검사장에서 검사를 실시함
- 1990년대부터는 OECD 국가 수준으로 무역정책의 사후적 관리로의 전환과 통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90년대 중반 본격적인 수출통관제도 규제완화가 중심이 되어 관세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함¹⁾
 - 1994년 수출신고 시 원칙적으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paperless)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1995년 수출 EDI를 시행, 1996년에는 수출면허제를 폐지하고 수출신고 수리제도를 도입하였음
 - 1994년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 수출물품 타소장치제도 또한 폐지하고²⁾ 1997년 12월에는 보세구역 반입의무를 폐지하였음

1) 이연호, 「관세법」,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0>, 2007. 10.

2) 다만, 부정수출이나 부정환급의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검사를 받게 함

- 기존에는 수출신고 시 수출물품을 반드시 보세구역이나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타소장치)에 장치하여야 했으나, 보세구역 장치의무제 폐지로 인해 타소장치 허가 수수료 납부수수료 연간 37억원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함께 수출통관제도 간소화를 도모함³⁾
- 보세구역 반입의무 관련 규정을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

- 2000년에는 지속적으로 신속한 수출통관제체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자동수리제를 95%로 확대하고, 수출신고물품의 검사대상 선별(C/S, cargo selectivity) 기준에 따라 선별된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현행 검사대상 선별기준은 우량기준⁴⁾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전국공통 선별기준’과 ‘세관자체 선별기준’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품목 및 업체, 수출제한사항을 회피하여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 및 업체,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우려가 높은 품목 및 업체,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은 품목 및 업체 등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 및 업체에 해당하는 정보 분석 결과와 우범성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함
 - 위조상품 수출 등 지적재산권 침해, 기타 부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리, 과다하게 증량 차이가 있다고 추정되는 물품,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은 검사생략 대상에서 검사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재무부 관세정책과 503-9292, 1993년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http://www.kdi.re.kr/infor/ep_view_source.jsp?num=30674&menu=1, 2015. 3. 3.

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3항에 따라 성실 수출업체로 인정되어 검사적용을 일부 배제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기준이며 이 성실 수출업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음: (1)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3)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 해당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4)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 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 (5)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 국제적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기존의 물류 촉진에서 무역안전을 우선하는 국제무역환경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생기면서, 2005년 WCO에서는 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SAFE Framework'를 채택하고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권고하고 있음
 - 출발지 세관은 송화물의 확인과 공급망 내의 불법적 간섭(unauthorized interface)을 적발하기 위해 해상 컨테이너 송화물과 관련해서 선별하고, 위험평가 및 조치는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취해야 함⁵⁾
 - 국제적으로 출항 적하목록을 적재 전 제출로 변경하여 선적지에서 검사대상을 선별하는 선적지검사체제로 변경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음

-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또한 신고제 전환, 보세구역 장치·보세운송 폐지 등 수출규제 폐지로 통관시간은 대폭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무역량 급증에 따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세관의 실효성 있는 관리수단의 부재, 밀수출 사례 발생 등 문제점을 인지하기 시작함
 - 수출입신고건수도 크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EDI도입(1993~1996) 당시 통관심사 체계로는 고위험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통제 및 성실업체 신속통관 지원 한계에 봉착함
 - 일부 수출자가 간소화된 수출제도를 악용하여 신고내역과 상이한 물품을 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⁶⁾
 - 물품도 없는 상태에서 수출신고하거나, 검사선별 시 신고를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수출신고 정정률이 10%(약 54만건)에 달하는 등, 세관 수출업무가 의미 없는 수출신고서 정정에 편중되어 있었음

-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업체·물품의 우범도에 관계없이 획일적 행정력을 투자하는 현행 심사·검사 프로세스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2월 저위험물품은 신속처리하고, 고위험물품에 역량을 집중하여 정밀심사하는 「Two-track 통관심사제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여 2009년 9월 시스템을 보완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09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⁷⁾

5) 한국관세물류협회(2010, p. 12) 참고

6) 한국관세물류협회(2010, p. 12) 참고

- 또한, 2011년 1월부터(제2010-50호, 2011년 1월 시행)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와 연계하여 기존의 물품소재지 검사에서 신고수리 후 적재 전에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환하여 수출검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수출물품 바뀌치기 등 불법수출을 차단하기로 함

- 이후에도 수출통관 관련 정책은 신속통관을 기본 기조로 하되, 불법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통관제도의 변천사를 요약하면 <표 II-1>과 같음
 - 2012년 1월부터는(제2010-128호, 2010. 12. 17.) 신속통관은 유지하되, 불법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
 - － 수출검사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하목록이 제출되고 수출검사 화물이 세관통제 영역에 들어온 후 적하목록 제출자 등에게 검사대상을 통보함
 - 2014년부터는(제2014-84호, 2014년 7월 시행) (1)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를 간소화하고, (2) 해외 직접구매 증가에 따른 직접신고가 확대되고, (3) 잠정가격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4) 서류제출 대상이 완화되는 등 수출통관제도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되었음

7) 관세청, 『관세연감』, 2009, p. 98 참고

〈표 II -1〉 수출통관제도 변천 요약

연도	개정 목적	주요 내용
1949년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관세법」 공포 •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현품검사 실시
1978년 12월	• 수출통관시간 단축	• 수출물품검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
1981년 1월	• 수출통관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검사 임의화 • 세관검사장 검사와 나누어 시행
1987년	• 수출통관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 제정 • 검사생략 원칙
1994년	• 수출통관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서류제출 생략(paperless) • 전자문서 시행
1995년	• 수출통관시간 단축	• 수출 EDI 시행
1996년	• 수출통관제도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면허제 폐지, 수출신고 수리제 도입 • 수출물품 보세구역 장치의무 폐지 • 수출물품 타소 장치제도 폐지
1997년 12월	• 수출통관제도 간소화	• 보세구역 반입의무 폐지
2000년	• 신속통관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동수리제를 95%로 확대 • C/S기준에 따라 선별된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
2004년	• 수출검사의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 도모	• 적재 전 검사 도입
2009년	• 심사와 검사 프로세스 비효율 개선	• 'Two-track' 통관심사제도 구축
2011년	• 수출검사 대기시간 단축 및 불법수출 차단	• 신고수리 후 적재 전 검사 원칙으로 전환
2012년 1월	• 불법수출 차단하기 위한 제반 규정 정비	• 적하목록 제출 후 수출검사대상 통보
2014년	• 전반적인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신고 확대 • 잠정가격신고 도입 • 서류제출대상 완화

자료: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3. 우리나라의 불법수출 현황

가. 불법수출 관리방법

1) 불법무역의 유형

-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관세·부정무역 단속활동은 불법물품을 국내 반입시점에서 봉쇄함으로써 국내 유입에 따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외거래질서와 국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밀수,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 지식재산권 사범, 대외무역사범 등으로 구성됨
 - 밀수·관세포탈·부정수입 등 관세사범, 공항·항만에서 발생하는 마약사범, 원산지 위반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입 등 대외무역사범, 수출입·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사범을 단속하고 있음
- 관세사범은 마약,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제외한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로, 직접밀수,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수출입 허위신고, 밀수품 취득 등의 유형이 있음
 - 「관세사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사범이 있음
- 「대외무역법」 상의 위반사범은 원산지 허위표시,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물품 등으로 가장, 외화도피 목적 가격조작 등의 유형이 해당됨
- 또한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관세청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사범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말함
- 불법무역의 단속 추이는 일관된 증감 없이 불규칙적이며, 부정무역 금액에 따라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II-2〉 관세·부정 무역 사범 단속실적

(단위: 억원,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관세법」 위반	금액	6,548	11,257	6,624	8,801	12,094
	건수	2,036	1,956	1,980	1,811	2,044
지식재산권 침해	금액	12,481	10,887	7,561	9,332	5,750
	건수	777	722	530	587	373
「대외무역법」 위반	금액	2,952	2,287	6,195	2,873	3,416
	건수	214	159	141	114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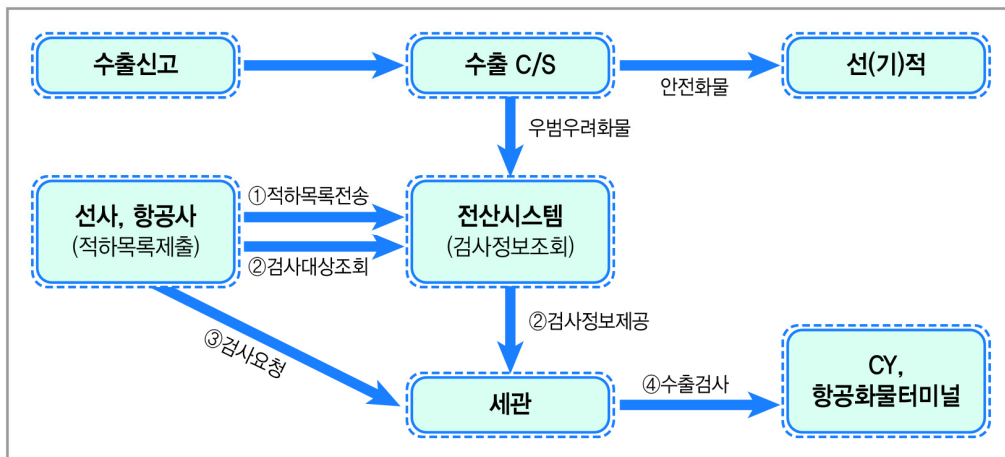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조사총괄과-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smart/chart_view.jsp?idx_cd=1136&bbs=INDX_001&clas_div=C&rootKey=6.48.0, 2014. 7. 31., 검색일: 2015. 2. 4.

2) 불법수출 관리방법

- 국제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국가 간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반면, 수출통관절차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국가 간 통제를 제한하고 문화재, 전략물자, 마약, 대테러물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WTO, WCO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가 간 무역 촉진 등을 위해 이를 권고하고 있음
- 이에 관세청 또한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표준 통관절차에 맞춰 지속적으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면서도, 전략물자, 마약, 대테러물품, 모조품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단속의 관세행정을 강화해 왔음

-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불법수출 단속활동은 (1) 통관절차 단계의 적하목록 제출상의 우범화물을 선별하는 것과, (2) C/S, 수출검사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불법수출에 대한 처벌제도를 두는 것으로 이루어짐
- 특히, 2004년에 도입된 적재지 검사는 외국무역선에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적하목록에서 파악하여 적재지에서 수출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불법수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로 볼 수 있음

[그림 II-2] 적재지 검사 흐름도



자료: 채봉규(2012, p. 6)

- 이 제도 초기에는 수출검사의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적재 전 검사를 도입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음⁸⁾
 - 적재지 검사 전환으로 검사장소 이동비용 등 절감, 개장검사가 아닌 차량형 X-ray 검색기를 통한 간편·신속한 수출검사(현품검사→X-ray 검사)가 가능하게 됨
 - 2009년 5월 18일 중고컴퓨터로 위장한 중고차량을 적발하는 등 수출검사비용 28억 원 상당 절감 효과를 냈음⁹⁾

8) 안보위해물품 및 마약 등 특별한 범칙정보가 있는 경우,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 산재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적재 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및 기타 세관장이 적재시점에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출신고 시 검사방법을 신고수리 전 검사가 아닌 적재 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011년 수출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상화물의 경우 적재 24시간 전(근거리 적재 전), 항공화물의 경우 적재 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운송수단에 적재될 적하목록을 근거로 수출검사를 실시함¹⁰⁾
 - 우리나라 수출의 50% 이상이 WCO SAFE Framework에서 권고하는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국제 무역관행에 부합하도록 2011년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함
 - 2011년 3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함
 -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제출시기가 기존의 적재 전에서 적재 24시간 전으로 개정됨

- 이 제도의 도입으로 2011년부터는 적재지 검사 원칙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 다만 적재 전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및 재수출물품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수출통관 프로세스는 수출신고, 수출신고 수리, 적하목록 제출, 수출검사, 선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수출물품 선적계획이 확정된 후에 검사함으로써 ‘바꿔치기’ 등의 밀수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존의 제조공장 방문(내륙지) 수출검사 체제는 검사완료 후 ‘바꿔치기’에 의한 밀수출·부정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했음

9) 길애경, 「적재전 수출검사 전환… 신속한 수출통관, 불법수출 차단」, (주)대덕넷, 2010. 10. 26., <http://www.hellodd.com/news/article.html?no=33194>, 검색일: 2015. 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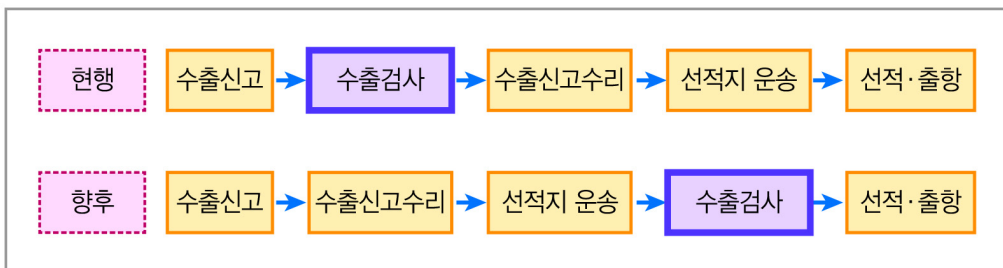
10) 한국관세물류협회(2010, p. 12) 참고

〈표 II-3〉 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 비교

구분	신고지 검사	적재지 검사
검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고 후 내륙지 세관에서 화주와 협의하여 화주 창고를 직접 찾아가 수출검사 대상에 대해 검사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무역선에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CY, 항공터미널 등)를 적하목록에서 파악하여 적재지에서 수출검사를 실시
검사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적재지(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
검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회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당해물품을 반입하고 물품검사를 요청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검사에 장시간 소요 보세운송 및 보세구역 반입의무 폐지 ⇒ 물품소재지에 현품이 없어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곤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 ⇒ 수출물품 확보 전에 수출신고가 가능하여 바뀌치기 등 불법행위에 노출 다수의 허위 수출신고 ⇒ 다수의 수출신고 정정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화주와 검사 협의절차 불필요 컨테이너 스캐너, 이동형 X-Ray 차량 등의 활용으로 검사시간 단축 물품검사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됨 성실 신고의 증가

자료: 채봉규(2012, pp. 5-7)

[그림 II-3] 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 흐름 비교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도난 자동차 불법수출 원천 차단」, 2010. 7. 12

- 사후적인 관리제도로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상 수출 관련 처벌 대상 범죄로는 금지품 수출입, 밀수출, 부정수출입, 밀수품 취득 등이 있음

- 현행 처벌 규정 가운데에는 금지품을 수출하는 경우를 가장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음
- (「관세법」 제269조 제1항) 음란물, 위조화폐 등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또는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밀수출입물품(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또는 수출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표 II-4〉 수출 관련 관세범죄

구분	위반내용	처벌
금지품 수출	• 수출입금지품(음란물, 위조화폐 등)을 수출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금지품 몰수·추징
밀수출	• 수출(반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밀수품 몰수·추징
부정수출	•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밀수품 취득 등	• 밀수품(혹은 부정수출입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감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밀수품 몰수·추징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187&layoutMenuNo=121, 검색일: 2015. 2. 6.

나. 불법수출 현황

- 최근, 중고차량 등의 불법수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난차량 등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품명을 위장하여 수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 수출검사 시 적발 가능한 불법수출 유형 및 검사결과 내용과 각 검사결과에 따른 적발 점수는 <표 II-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음

<표 II-5> 수출검사 결과내용 및 적발점수

대분류	소분류(검사결과 내용)	결과 부호	적발 점수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A	0
품목분류 상이	• 세번 상이(환급대상)	B1	3
	• 단순 세번 상이(비환급대상)	B2	1
수량·중량 상이	• 수량·중량 부족(신고가격 감소)	C1	2
	• 수량·중량 과다(신고가격 증가)	C2	2
	• 수량·중량 과(부)족(고발의뢰)	C3	3
원산지규정 위반	• 원산지 표시여부 신고오류	D1	1
	• 원산지 허위 표시	D2	2
	• 원산지 오인 표시 및 표시 부적정	D3	2
	• 원산지 결정방법 신고오류	D4	1
	• 기타 원산지 관련 위반사항	D5	1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변경	• 경미한 사항(동일 세번)	E1	1
	• 중요사항(세번 변경)	E2	2
지적재산권 위반	• 위조상표 수출(고발의뢰)	F1	3
	• 상표권 침해	F2	2
	• 저작권·의장권 등 위반(고발의뢰)	F3	3
	• 기타 상표명 미기재 오류 및 지재권 관련 위반사항	F4	1
위장 수출	• 수출금지품 위장 수출	G1	3
	• 미신고물품 혼입 및 위장 수출	G2	3

〈표 II-5〉의 계속

대분류	소분류(검사결과 내용)	결과 부호	적발 점수
현품검사 곤란	• 수출신고 수리 전 적재로 현품검사 곤란	H1	1
	• 미제조로 현품검사 곤란	H2	1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	•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 미준수	I	3
중고차량 불법수출 위반	• 차대번호 상이 신고	J1	1
	• 기수출 차량 신고 오류	J2	1
	• 도난·범죄 차량 적발	J3	3
물품상태 상이	• 중고를 신품으로 신고 오류	K	1
수리 후 분석	• 정확한 품목분류 곤란 또는 성분분석을 요하는 물품	L	1
신고 오류	• 모델, 성분, 물품장치장소부호 등 단순 상이 오류	M1	1
	• 신고물품 일부(전체) 누락 신고 오류	M2	3
거래구분 정정	• 원상태 수출 부적정	N1	3
	• 계약 상이 수출 부적정	N2	3
스마트폰 불법수출 위반	•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5개 미만)	O1	1
	•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5~9개)	O2	2
	•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10개 이상)	O3	3
기타	• 기타 사유(Text 직접 입력)	Z	1

- 관세청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하는 도난 차량의 불법수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11월 26일부터 중고수출차량에 대한 일제 현품검사를 시작함¹¹⁾
- 또한 2002년 차량등록 전산망 연계 전산시스템 운용하기 시작, 2006년 유관기관 간 ‘도난차량 T/F팀’ 구축, 역할분담체제를 확립하여 집중적인 감시 및 검사 실시, 선적 전 검사 강화, 밀수출 방지 홍보를 강화해 옴
- 중고차량 주요 수출국, 우범 수출업체, 전과자 등을 DB화하여 이들 자료를 활용한 우범업체, 물품 등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고 있음
 - 이동식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도입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자동차 등 밀수출물품에 대하여 선적 전 검사를 강화함

11)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도난차량 불법수출 방지를 위한 현품검사에 총력”」, 2001

-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고수출업자, 선박 회사, 운송업자 등 관련 종사자까지 정보입수 범위를 확대하고 밀수출방지 홍보를 강화함

- 2011년 중고차량 밀수출 특별단속 결과, ①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여 바꿔치기 선적, ② 밀수업자와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공모하여 수출신고 없이 무단 선적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드러남
 - (예1) 중고차 수출업자 A씨 등은 다른 회사에서 수출신고한 수출신고필증을 구매하거나 폐차·말소 차량을 직접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차량의 차종, 차대번호를 출력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출신고필증에 올려붙여 복사한 후 복사본을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에게 제출해 선적하는 수법으로 중고차 1,006대를 밀수출하였음
 - (예2) 중고차 수출업자 B씨 등은 국제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공모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한 차량 대신 문제차량을 무단 선적시키는 수법으로 중고차 80대를 밀수출하였음

- 중고차량 밀수출은 국내 자동차 수출업체 및 중고차량 수출업체의 수출 저해 요인이 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 간접적인 폐해가 뒤따름
 - 근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고소가 증가하고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음
 - 허위 도난신고를 통한 부당한 보험금 수령 및 부가가치세 탈세로 인한 국고 손실 등의 피해를 유발함

- 2010년에는 도난 자동차의 불법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중고자동차 선적지 검사 도입 등 중고자동차 검사를 강화하고 있음
 - 수출업체의 신속통관지원을 위한 보세구역 장치의무 폐지 등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내륙지 검사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모든 중고자동차에 대해 선적지에서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폐차 등 수출 부적합 차량 등은 전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표 II-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고차량 밀수출은 이러한 지속적인 감시체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6〉 중고차량 밀수출 적발실적

(단위: 대, %)

연도	총 수출된 중고차	밀수출로 적발된 중고차	
	수량	수량	비중
2004	319,244	335	0.10
2005	194,642	156	0.08
2006	197,235	37	0.02
2007	221,393	267	0.12
2008	271,243	148	0.05
2009	269,126	177	0.07
2010	243,287	163	0.07
2011	293,208	248	0.08
2012	374,393	1,705	0.46
2013	308,924	621	0.20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검사 강화, 제도의 정비 등 불법수출 관련 규제정책의 정립이 미비해서인지, 아니면 수출검사 강화 등으로 오히려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인지는 기초자료 미비로 인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 다만, 행정청에서 도입한 적재지 검사는 우범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2011년 이전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선별하는 데 적재지 검사가 많이 활용되었으나 2011년 ACTA(지식재산권 침해조약)이 체결되면서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함
- 다음 장에서는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사용하여 교역안전을 위한 우리나라 수출통관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Ⅲ. 주요국의 수출통관제도

- 주요국의 구체적인 수출통관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제규범상 수출통관제도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주요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로 선정하였으며 미국(2위)과 일본(4위)은 우리나라(7위)보다 수출 순위가 높으며 캐나다(10위)와 호주(20위)는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음

1.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SAFE Framework)

가. 구성¹²⁾

- 2005년 6월 WCO 총회에서 표준규범으로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이하 'SAFE Framework'라 함)를 승인함¹³⁾
 -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WCO에서 국경안전에 대한 세관의 노력을 위해 2002년 6월 '무역공급망 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on Security and Facilit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을 채택함
 - 2005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157개 회원국이 본 규범에 가입 후 36개월 이내(개도국은 60개월 이내, 최빈국은 84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제출함

12) 정재호·김미영·류태현,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 FTA 통관규정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13) 2007년 AE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합하고 2010년 공급망관리 가이드라인, AEO 이행 지침, AEO Compendium 등을 통합한 SAFE Package를 구성, 2011년 6월 위험평가를 위한 데이터 항목을 부속서로 포함시켰음

- 관세당국¹⁴⁾의 자동화된 위험관리기법을 이용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최소한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의 이행능력과 입법 권한에 따라 다음의 4가지 필수요소를 고려하여 이행함
 - 수출입 및 환적화물의 사전 전자신고 항목 통일
 - 보안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지속적인 위험관리
 - 고위험 화물 검사에 대한 세관당국 간 협력
 - 세관이 민간업체에 제공할 최소한의 공급망 안전 표준과 모범에 부응하는 이익을 정의

- 주요 내용은 국제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통합표준의 정립, 세관과 세관, 세관과 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를 추진, 민간 자율심사를 위한 AEO제도 등으로 이루어져있음
 - 서문, 이익(Benefits-국가/정부, 관세당국(Customs) 및 민간업체(Business)), Pillar 1 세관 간 협력 표준, Pillar 2 세관과 민간 간 협력표준, AEO조건, 의무사항 및 혜택, 관세협력위원회의 결의안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됨
 - 각 표준은 이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포함함

- 이 가운데 'Pillar 1 관세당국 간 협력표준'은 고위험화물을 식별하기 위한 사전 전자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화물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요소로 아래와 같이 11개의 표준으로 구성됨
 - 화물을 선적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위험성 식별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자동화된 정보교환을 위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시스템의 상호 운용이 가능해야 함

14) 관세당국(Customs)이라 함은 관세법령의 운영과 관세 및 제세의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물품의 수입, 수출, 이동 또는 장치와 관련된 다른 법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을 의미함

〈표 Ⅲ-1〉 SAFE Framework 관세당국 간 협력 표준

구분	내용
표준1	• 통합공급망관리(ISCM)의 적용
표준2	• 화물검사 권한의 부여
표준3	• 최신 검사장비의 구비
표준4	• 위험관리시스템의 확립
표준5	• 고위험화물 또는 고위험 컨테이너의 정의
표준6	• 사전전자정보 요구시 시스템 구비
표준7	• 합동 표적화 구축과 의사소통 메커니즘 제공
표준8	• 세관통제 ¹⁵⁾ 이행조치의 통계화
표준9	• 안전평가를 위한 다른 관련기관과의 협력
표준10	• 고용인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표준11	•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국의 보안검사 요구

- 각 관세당국은 개정교토협약, 통합공급망관리(ISCM: Integrated Supply Chain Management)¹⁶⁾ 및 자국의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Pillar 1을 표준화함¹⁷⁾
 - 개정교토협약은 일반부속서 6.7 표준에서 관세당국은 다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세관통제를 촉진시키는 상호행정지원협정(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greements)의 체결을 모색하여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함
 - 통합공급망관리의 이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컨테이너에 적입하기 전 또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수출지 세관에 전자정보 제출
 - AEO, 검사 등 상호인정 및 화물의 무결성 감독 절차에 대한 관세당국 간 협력
 - 세관의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 컨테이너 화물 봉인의 무결성 프로그램(Seal Integrity Program)을 적용
 - 모든 무역거래과정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총체적인 심사추적 관리를 가능하게 고안된 UCR(Unique Cargo Reference)의 적용

15) 세관통제(Customs control)라 함은 관세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이 적용하는 조치를 의미함

16) 국제적인 테러 및 범죄조직의 증가로 인한 위협의 증가에 대비해서 효과적이고 선진적인 세관과 민간의 협력,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유지하고 안전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한 WCO가입 관세당국을 위한 가이드라인

17) 송선옥, 「국제공급망 안전을 위한 세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5호, 2007.

- 관세당국 간 정보 교환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 개정교토협약의 체약당사국에게 표준화된 필수 요구 정보와 절차, 요구정보를 간소화하고 전자서류 제출 등을 지원하는 CDM(Customs Data Model) 적용
- 무역에 관련된 다른 정부기관과 관세당국과의 상호협력 협정을 개발하여 무역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Single Window 구축

□ Pillar 2 관세당국과 민간 간의 협력 표준은 세관의 공급망관리에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보장하는 업체에 신속한 통관 및 실질적 이익을 부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6개 항목으로 구분

〈표 III-2〉 SAFE Framework 관세당국과 민간 간 협력 표준

구분	내용
표준1	• 세관과 AEO업체는 적절한 보안기준의 결정, 문서화, 사후관리 등을 실행
표준2	• 물리적 접근통제 및 보안기준 마련 및 통제절차 수립
표준3	• AEO업체의 혜택에 대한 인증 및 적합성을 부여하는 절차 구축
표준4	•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화물의 무결정 보장
표준5	• 긴급연락망 구축 및 의견교환
표준6	• 무역의 원활화 및 수출입관리의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을 도모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자국 관세당국 또는 WCO 및 그에 상응하는 기관의 수출입공급망관리 기준에 따라 승인받은 국제무역 당사자를 말함
 - 우리나라는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 준수, 재무안전성, 내부통제, 안전관리능력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로 관세조사 제외, 수출입검사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함

나. 수출관리 표준

- 개정교토협약의 일반부속서 표준 7.1, 6.9, 3.21, 3.18은 세관활동을 위해 전자상거래 기술의 이용을 포함한 정보교환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세관이 적용하도록 규정함
- 이와 관련하여 SAFE Framework 관세당국간 협력표준 1에서도 출항지 세관에서의 화물관리를 강조하면서 세관 간 정보 공유 및 정보를 교환할 것을 권고함
 - 통합공급망관리 표준(Integrated Supply Chain Management, ISCM Guidelines)을 준수하여 WCO의 세관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세관관리와 위험평가는 수출자가 수출을 위해 화물을 준비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세관절차의 중복 없이 화물 무결성 검증절차가 통관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표준 1.2.2)
- 표준 5에서는 저위험화물로 간주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화물 또는 컨테이너, 고위험을 명시하는 특정한 정보가 있거나 화물보안항목에 근거한 위험평가 기법에 의해 고위험으로 선별된 화물을 고위험 화물(High-Risk Cargo) 또는 고위험 컨테이너로 정의함
 - 세관에서는 잠재적인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적발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법에는 출발 또는 도착 전 화물에 대한 전자정보의 수집, 자동무역 서류, 무역공급망의 보안 유지, 무작위 분석기법 등이 포함됨
 - 예를 들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무역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은 화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표준 11에서는 수출화물에 대한 보안검사를 권고하면서, 수입국에서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화물검사를 요청할 경우 수출화물에 대한 보안검사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2. 미국

가. 수출통관 절차 개요

1) 수출신고

- 미국은 2008년 7월부터 모든 화물의 수출정보를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 Automated Export System)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AES시스템은 수출 선적자료가 관세청에 전자적으로 신고되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임¹⁸⁾
 - AES시스템은 24시간 가동하고 있어 시간 제약을 받지 않음
 - 미국 내 모든 항만, 공항, 국경을 경유하는 모든 수출품에 적용됨
 - AES에 송신하는 전자수출정보(EEI: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항목에는 모든 신고에 필요한 필수적 항목, 라이선스 물품 등 특정화물의 신고에 필요한 조건부 항목, 그리고 임의신고 항목 등 3가지가 있음

- 수출통관은 무서류로 진행되나 AES시스템에서 내용을 심사하여 성공적으로 신고했다는 확인으로서 내부업무 처리번호(ITN, International Transaction Number)를 발행하며 이를 수출허가증으로 간주함
 - 따라서 ITN을 취득하지 않는 한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함¹⁹⁾
 - 또한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물품이나 군수물자 등은 AES에서 매우 엄격하게 심사 및 관리하고 있음²⁰⁾

- AES를 통하여 전자수출정보(EEI)를 신고할 수 있는 당사자는 미국 수출자(USPPI), 미국수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외국의 수입자(FPPI)로부터 위임을 받은 미국 내 대리인임²¹⁾

18) 정재호 외 2명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2010. 10

19) 성한경 외 2명 『주요국의 통관제도: 미국』, 2014. 9

20) 성한경 외 2명 『주요국의 통관제도: 미국』, 2014. 9

- 수출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매도인, 제조자, 발주자 등이며 미국에서 구매를 위해 미국에 체류하며 수출물품을 구매하여 외국에 발송하는 외국기업들도 수출자에 포함됨
 - 수출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외국기업의 구매에 의한 수출인 경우 수출관리규칙(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따라 수출라이선스 신청 시 수출자가 될 수 있지만 수출신고 시에는 수출자가 대상이 될 수 없음
 - 외국의 수입자 스스로 미국 대리인에게 수출신고를 위임했을 경우 위임받은 대리인은 외국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신고하기 위해 외국 수입자로부터 위임장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
- 수출신고는 2,500달러 이상의 모든 수출화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인터넷주문 화물도 포함되며 허가대상 물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함
- 허가대상 물품에는 상무성 및 국무성의 라이선스 필요물품, 약품관리청(DEA)의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는 물품, 특정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물품, 기타 연방정부기관에 의해 라이선스가 필요한 물품 등이 있음
- 수출신고 시기는 대외무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출 전 신고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았을 시 수출 후 신고가 가능함
- 선박화물의 경우 선적되기 24시간 전, 항공화물은 항공기 출발예정 2시간 전, 트럭화물의 경우 트럭이 국경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우편과 기타 운송 수단의 경우 수출하기 2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신고해야 함
 - 운송수단별 화물정보의 제출기한은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수출허가 대상 화물은 화물정보의 사전제출요건을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출발 전에 화물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다른 정부기관에서 통제하는 수출 화물에 대한 요건은 변경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대로 시행해야 함²¹⁾

21) 한상현·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 수출신고 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11권, 제2호, 2010.6

- 출발 후 수출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인 사전 승인을 받은 수출자만 가능하며 신고는 출발 후 10일 이내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출발 후 승인받은 수출자는 직접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AES 위임대리인이 미국 수출자를 대신해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음
 - 위임대리인이 미국의 수출자를 대신해 출발 후 신고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출자만 신고 가능함²³⁾
- 수출하는 화물이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 혹은 포워더의 창고 등 어디에 장치되어 있든 AES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2) 물품검사

- 관세법 시행규칙 19 CFR 192.14(C)(4)에 따라 CBP가 잠재적으로 높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지한 화물에 대해 화물 검사를 위해 운송인은 화물을 관세청에 인도해야만 함
 -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화물이 국외로 반출된 경우 관세청은 수출을 담당하는 운송인이 국제 운송인 담보(International Carrier Bond)조건에 따라 화물을 관세청에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가) EIS(Export Information System)

- AES 신고 시스템상에서 수입물품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는 수출통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검사가 필요한 특정 물품에 한해서만 이루어짐
 - 수출수속은 모두 무서류(Paperless)이지만 그 내용에 대한 심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 ITN을 발급하고 있음

22) 정재호 외 2명 『미국의 수출통관 제도』, 2010. 10

23) 한상현 · 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 수출신고 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11권, 제2호, 2010.6

- 미국 CBP는 수출보안의 중요성으로 미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통관을 위한 통제, 추적을 위해 필요한 전자적 및 문서의 기록 유지, 사용, 수집을 위해 수출정보시스템(EIS)을 개발하였음
- EIS는 AES와 AES Direct를 통한 수출신고 정보, CBP가 수집한 문서와 형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CBP는 이 정보를 토대로 화물과 문서를 검사함
 - 파일러(filer)가 CBP로부터 데이터 전송 증명(obtain a certification)을 받으면 전자적인 데이터를 EIS에 전송하며 데이터가 EIS로부터 승인되면 AES는 ITN을 발급함
- 수출화물과 관련된 개인 및 개인의 법률 위반 확인을 위해 CBP는 EIS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보다 많이 수집하여 수출통제 및 무역통계정보 수집을 강화하고자 함
 - 예를 들어 자주차량(self-propelled vehicle)의 VIN 및 title number의 확인은 도난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EIS는 CBP의 ATS-AT(Automated Targeting System-Outbound)와 연결되어 EIS의 정보를 바탕으로 ATS-AT는 수출되는 고위험 화물을 표적화하여 검사를 실시함
 - 고위험 물품 검사는 CBP의 미국의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위반, 밀수, 통화, 불법 마약 그리고 기타 밀수품 등의 위험요소 선별 및 검사를 지원함
 - EIS의 정보는 FALCON-DARTTS, (FALCON-Data Analysis & Research for Trade Transparency System)과도 공유되어 불법거래 등과 같은 미국 무역법 위반사례 확인을 위해 사용됨

나) ATS-AT(Automated Targeting System-Outbound)

- ATS는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CBP가 개발한 자동 표적화 프로그램으로서 표적화한 대상(화물, 승객,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안보 강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

- ATS는 ATS-AT(Anti-Terrorism), ATS-N, ATS-L(Land), ATS-P(Passenger), ATS-TF (Targeting Framework)의 5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
 - ATS-AT는 수출 화물과 교통수단(기차, 트럭, 선박, 항공), ATS-N는 수입 화물과 교통수단(기차, 트럭, 선박, 항공), ATS-L은 국내로 반입되는 개인용 차량, ATS-P 승객과 차량(기차, 선박, 항공)에 대해 표적화하고 있음

- ATS-AT는 AES와 AESDirect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수출정보를 수집 및 평가하는 모듈임
 - 수집된 수출 데이터는 CBP 직원이 교통안전과 안보위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선별되고 규정 준수 여부를 비교함
 - ATS-AT는 수출문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문서에 기재된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도 검사함

- ATS-AT는 화폐 밀수, 불법 마약뿐 아니라 도난 차량, 위험물질 등 특정 수출 금지 화물의 위험을 비롯하여 연방 항공국 위반(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항공 안보 위협과 관련하여 표적화한 화물을 검사함
 - ATS-AT는 세관의 규정과, 마킹 검토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선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음
 - ATS-AT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출정보 확인뿐 아니라 수출물품의 검사 기록도 저장함

나. 수출통관 관련 제도

a) C-TPAT Export

- 우리나라의 AEO와 유사한 제도로써 미국의 C-TPAT은 2001년 11월에 시작되었으며, 수입화물에 대한 보안에 중점을 두며 시작되었지만 2014년 C-TPAT Export를 새롭게 분류하여 수출업체를 공인함

- C-TPAT의 공인 대상은 12개로 수출업자를 비롯하여 수입업자, 항공운송업자, 화물 혼재업자(항공운송 혼재업자, 해양운송 중개인, 무선박 운송인(NVOCC), 관세사, 외국 제조업자, 고속도로 운송업자, 멕시코의 장거리 운송업자, 항만 터미널 운영업자, 철도 운송업자, 해상 운송업자, 제3자 물류업자임
- 물리적 접근 통제, 절차적 보안, 직원의 보안, 컨테이너 보안, 정보기술 보안 등이며, 보안 항목별로 정해진 세부 보안지침을 이행하여야만 공인을 받을 수 있음
- C-TPAT 수출업체들은 낮은 검사 비율과 빠른 수출 통관, 빠른 선적을 비롯하여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C-TPAT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미국에 업체(Business Office)를 두고 있으며 납세자 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또는 DUNS(Dun & Bradstreet) 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또한 지난 12개월간 미국의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마약 단속국과 국방부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인정 가능한 수출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 C-TPAT 수출자 협의(Export agreement)에 제시된 보안 가이드(Security Criteria) 라인을 이행하겠다는 합의(Commit)를 해야 함
 - C-TPAT 수출자 보안가이드 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정책을 어떻게 준수하고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C-TPAT supply chain 보안 프로필을 CBP에 제공해야 함

다. 수출통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²⁴⁾

- 미국은 관세법 18, U.S Code 554에서 밀수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밀수출의 경우 2006년 2년에서 10년으로 징역기간을 개정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24) 정재호 · 김수영 · 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밀수입과 밀수출을 구분하여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밀수출의 경우 밀수입보다(20년 이하의 징역)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음
- 관세법 18. U.S Code 546에서는 외국법이 미국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몰수 시 미국 또한 밀수한 자가 미국과 관련이 있다면 처벌하는 규정조항을 두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함
- 금지품 수출입에 대한 처벌 규정은 관세법상 조항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음
- 관세법 18.U.S Code 553에서는 도난된 자동차나 비고속도로의 모바일 장비, 선박, 항공기 등의 수입과 수출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 교사범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도난된 자동차나 비고속도로 모바일 장비, 선박, 항공기 등의 불법 수출 시 법률에 위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도와주거나 교사한 경우(Knowingly aids or abets)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 수출신고를 허위로 하였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3. 호주

가. 수출통관 절차 개요

1) 수출 신고²⁵⁾

- 호주는 자국에서 수출되는 품목 중 2천호주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품목을 기본적으로 수출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2천호주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개인적 자산 (Personal or household effects), 애완동물, 2천호주달러 미만의 수출품, 관세법 제162A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카르넷(Carnets), 호주 우편물 혹은 외교관 물품, 군용선박이나 항공을 이용해 운반되는 군용물자 등
- 수출신고는 크게 (1) ICS를 통한 전자신고 방식, (2) Form B957(수출신고서)를 작성하는 서면신고 방식, 그리고 (3) Form B957a(Export Declaration Supplementary Page)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통합화물관리시스템인 ICS(Integrated Cargo System)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
 - ICS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Form B319(Client Registration Form)을 작성하여 ACBPS에 ICS에 고객(client)으로 등록해야 함
 - 수출자 혹은 수출업체가 호주 사업자 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BN이 ICS의 고유 식별번호로 사용되며 ABN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ICS는 등록자(업체)에게 Customs Client Identification(CCID)이라는 고유한 ID를 부여함

25) 김한성, 『주요국의 통관제도: 호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7

- 수출자는 수출품이 선적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수출 시점에서 6개월 이전부터 수출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함
 - 수출신고 작성에서 신고서 작성자 혹은 작성대행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짐
 - 수출자가 호주사업자번호(ABN)를 가진 경우 반드시 동 번호를 수출신고서 작성에 사용해야 함²⁶⁾

- 호주 관세법 제 231조의 신고자 보고의무에 따라 호주에서 출발하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출발 3일 전까지 주요 적하목록을 ACBPS에 의탁(lodge)해야 함
 - 수출승인서(Certificate of Clearance)를 받기 위해서는 출발신고서(departure report)를 ACBPS에 의탁해야 함
 - 수출 이후 수정된 수출신고서 정보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를 수정해야 함
 - 수출신고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수출자는 7일 이내에 수출신고번호(Export Declaration Number, EDN)를 철회해야 함
 - 수출신고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출품의 이동이 있을 경우 및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ACBPS에 신고해야 함

- 수출신고서를 ACBPS에 의탁하면 ACBPS는 각각의 수출신고서에 대하여 수출신고번호(Export Declaration Number, EDN)를 부여함
 - EDN은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Clear'의 경우와 추가적인 정보나 수정이 필요한 'Error'의 경우로 분류되며 CLEAR EDN은 법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상황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을 시 수출신고는 10분 이내에 즉시 수리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화물검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수리됨

26)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신고서 작성자와 수출물품 소유자의 ID가 필요한데, 수출신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ID는 호주기업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이나 ACBPS에서 발행하는 세관고객ID(Customs Client Identifier, CCID)가 사용될 수 있음. CCID는 ABN을 소유하지 않은 수출신고자 혹은 수출품 소유주에게 ACBPS가 부여하는 고유 ID임.

- 수출신고서 의탁 후 수출 물품 정보에 변동이 발생하면 아무 때라도 수출신고서의 수정이 가능하면 이러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가장 신속하게(as soon as practicable)' 수정해야 함
 - 수출신고서에 명시된 수출 예정일의 30일이 지나도록 수출이 되지 않고 수출신고서의 수정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출신고서에 대한 허가는 자동적으로 취소됨
 -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경매로 팔리거나 운송기간 중 국제시장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변동되는 품목일 경우에 수출자는 "Confirming Export Status"를 신청하여 ACBPS의 조사를 피할 수 있음

2) 물품검사

- 호주는 국경 보호와 마약 단속(Tough on Drugs strategies)의 이행을 위해 2002년 멜버른을 시작으로 모든 수출입 물품을 CEFs(Container Cargo Examination Facilities)를 통해 검사하고 있음
 - CEFs의 설립으로 빈 컨테이너뿐 아니라 수출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되었음
 - CEFs를 통해 수출 화물 보고 오류, 밀수, 금지 물품을 빠르게 파악하여 통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CEFs는 대부분의 화물을 검사하지만 일반적인 검사대상은 컨테이너화 된 화물로서 20TEU 이며 24시간 가동하여 대부분의 높은 위험화물(high risk cargo)를 선별하고 일정 부분의 낮은 위험화물(low risk cargo)도 검사함
 - 2002년 이전까지는 해상화물 자동 시스템에서(Customs Sea Cargo Automation , SCA)시스템을 통해 물품검사를 실시하였음

- 호주 관세청은 호주에서 수출입되는 해상화물을 검사하는 CEFs에 대한 이해도 강화 및 운영을 위한 업무준칙(Policy Statement)을 2013년에 제안하는 등 CEFs의 활용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
 - 업무 준칙은 CEFs의 중요성과 효과 및 활용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 등에 다루고 있음

- 물품검사의 순서는 위험물품, 수출품, 리퍼컨테이너, 오래 장치된 컨테이너 순으로 검사함
- 호주는 관세법에서 수출물품 검사에 대한 주체, 수출 신고 및 수리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상업법(commerce trade description act)에서는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1982)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통제 물품 수출, 표시가 잘못된 수출품, 수출 예정보고, 검사장소 통지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상업법에 따라 물품 검사 시 세관원은 선박, 부두 혹은 그 어떤 장소에도 출입하여 화물을 개봉하는 등 검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수출통관 관련 제도

1) AEO 시범 실시

- 호주는 2006년 통합된 화물 시스템의 검토 및 WCO SAFE Frame work 검토의 일환으로 AEO pilot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AEO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며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는 자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자의 경우 ACEANs(Accredited Client Export Approval Numbers)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ACEANs에 해당하는 업체는 물품검사 면제 및 빠른 통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2012년 폐지됨

다. 수출통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 호주는 관세법 제233조에서 수출 금지 물품의 수출과, 밀수출의 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 밀수출은 형법 제 9.1조에 따라, 마킹되지 않은 플라스틱 폭발물은 형법 제 72.13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 마약을 밀수출입한 경우, 그 양이 commercial quantity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7,500penalty units²⁷⁾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
 - 마약을 밀수출입 한 경우 그 양이 marketable quantity일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penalty units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
 - 국경관리소에서 제한하는(border controlled) 양의 마약을 밀수출입한 경우 또는 제한하는 양 이상의 마약을 밀수출입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penalty units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
 - 상업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고 마약을 밀수출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penalty units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
- 밀수출입 및 밀수출입 물건을 운반하였으나 범죄를 저지른 때 법원에 통지했을 경우, 혹은 법원이 범죄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범죄가 발생한 시기에 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제233조 AB(1)항에 따라 처벌됨
- 법원이 물품 가치에 해당하는 관세를 산정할 수 있을 경우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5 배 이하 벌금이 부과됨
 - 법원이 물품 가치에 해당하는 관세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000penalty units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금지 물품 수출입 규정을 위반한 때 법원에 통지했을 경우, 혹은 범죄가 발생한 시기에 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제233조 AB(2)항에 따라 처벌됨
- 법원이 물품가치(value)에 해당하는 관세(duty)를 산정할 수 있을 시 물품 가치의 3 배 이하, 1,000penalty unit 이하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됨
 - 법원이 물품가치에 해당하는 관세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000penalty units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호주 관세법에서는 위험 물질을 tier1, tier2로 나누어 수출 시 각각의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하고 있음

27) 호주 연방법(Commonwealth and Consolidated Act)에 따라 1 penalty unit은 170호주달러임

- Tier 1의 특정한 마약 촉진 활동, 약물(마약 제외), 그 밖의 금지 물품을 수출한 경우 1,000penalty units 이하의 벌금과 5년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
- Tier 2의 무기, 전투복, 나이프, 단검 및 유사물품, 화학혼합물, 살상 스프레이, 핵 및 방사능 물질, 인체조직, 사람의 체액, 아동 포르노물, 위조 신용카드 그 밖의 위조 카드 등을 수출한 경우 2,500penalty units 이하의 벌금과 10년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
- 관세법 제243v조에 따라 거짓으로 수출입 보고 또는 수량 및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 60penalty units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호주 관세법 제236조 및 237조에 따라 미수범 및 예비범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 그 밖에 상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 물품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예정 보고 및 희망 검사 장소를 통지하지 않을 시 1,000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4. 일본

가. 수출통관 절차 개요

1) 사전절차²⁸⁾

가) 일본 수출입자 표준코드(Japan Shippers & Consignees Standard Code)²⁹⁾

- 일본 수출입자 표준코드는 일반적으로 ‘표준코드’, ‘수출입자 코드’, ‘NACCS 코드’, ‘저스트 프로(JASTPRO) 번호’ 등으로 불리며 수출입자를 특정하는 12자리 숫자 또는 알파벳(알파벳 중 “I”와 “O” 제외) 조합된 코드임

28) 이상엽 · 김미영 · 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 일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29) <http://www.jastpro.org>. 2015. 2

- 표준코드를 취득함으로써 수출신고의 특례(관세법 제67조의 3)에 관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표준코드가 없어도 수출입 통관은 가능하지만, 표준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통관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표준코드의 신규 등록 신청은 신청서와 필요서류³⁰⁾를 JASTPRO에 우송 또는 제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3년에 한번 갱신해야 함³¹⁾

나) 세관 발급 코드

- 세관 발급 코드는 표준코드와 마찬가지로 12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NACCS에 의한 수출입 신고 등의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음

- 세관 발급 코드를 취득하지 않아도 수출입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수출입 신고 사항의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각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수출입자 코드가 있으면 NACCS에 의한 수출입 신고와 관련하여 포괄평가신고·포괄보험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세·소비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거치담보와 계좌 이체 납부(전용 계좌 및 실시간) 등의 이용이 가능함

2) 수출신고

- 일본은 지정 보세구역에 수출 물품을 반입 한 후 수출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무역 원활화를 위하여 2011년 10월 관세법 개정으로 보세구역에 수출화물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

30) 필요서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주민표 또는 주민기본대장*임(*우리나라의 주민등록표에 해당)

31) 신규 등록의 경우 등록수수료 6,600엔(갱신수수료 3,15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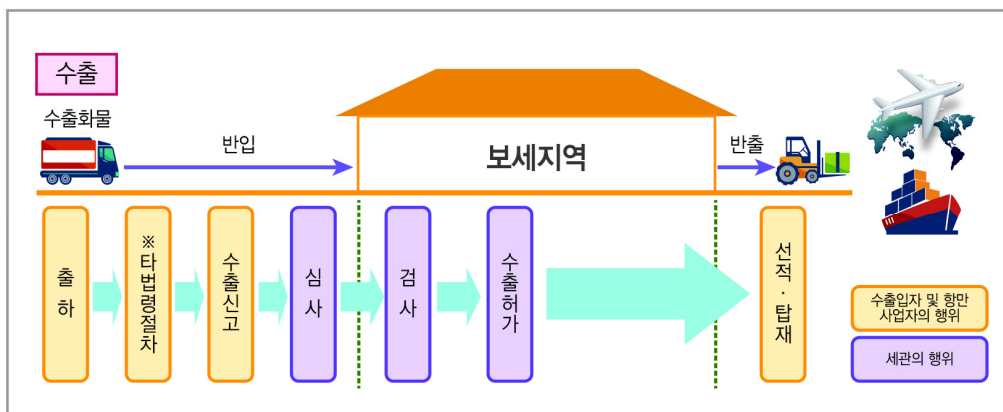
- 다른 법령의 허가 및 승인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 수출신고서의 제목 오른쪽에 반입 전 수출신고의 경우 ‘이전’, 반입 후 수출신고의 경우 ‘후’ 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해야 함
 - 특히 허가 및 승인이 필요한 화물의 반입 전 수출신고의 경우 보세지역에 물품 반입 후 신속하게 당해 세관에 보세지역에 반입이 있었다는 연락을 취하면 반입 전 수출신고의 이행이 가능함
 - 다만, 부정 수출 및 소비세의 부정 환급 억제 관점에서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수출신고는 가능하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해야 함
신고는 즉시 수리되거나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검사 후 신고가 수리됨
- 수출신고는 전자통관시스템 NACCS를 통해 이루어지며 NACCS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수출자는 전자 단말기가 설치된 세관에서 창구 전자신고를 통해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³²⁾
 -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비롯하여 포장명세서, 수출 관련 다른 법령의 허가·승인증(다른 법령에 따라야 하는 화물의 경우), 관세정률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경감, 면제 또는 환급 관련 특정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화물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세관의 심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검사지정표’를,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서’ 등을 전달하며, 검사 또는 납세 등이 완료되면 ‘수출입허가 통지서’가 발급됨
 - 사료(가루)와 철광석·자갈 등 벌크화물이 혼재되어 있지 않고, 세관 검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선 취급’ 또는 ‘부중(艇中) 취급’으로 본선이나 바지선에 승선한 상태에서 수출 검사 및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³³⁾

32) 이상엽·김미영·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 일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33) 이상엽 외 2명(2014)

- 화물의 보안관리 및 사내 규정 준수 체제가 잘 정비되어 사전에 세관장이 승인한 특정 수출자의 경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율표를 수입 및 수출 시 공동으로 사용하나, 일본은 수출시 수출통계품목표상의 번호를 기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일본 관세국에서 수출통계품목표를 별도로 고시하고 있음

[그림 Ⅲ-1] 일본의 수출 절차



출처: 이상엽 · 김수영 · 김미영, 『주요국의 통관제도: 일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1) 물품 검사

- 수출신고된 화물의 심사, 검사 및 권한은 통관 사무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일련의 작업으로 동일한 세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 대상 관서는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화물을 넣는 보세장소 등을 관할하는 세관 관서로 함
- 수출통관의 보세반입 원칙 폐지와 함께 보세구역 반입 전 수출신고가 ‘본 신고’로 바뀌어 기존에 실시하던 수출 예비신고제도가 폐지됨으로써(수입 예비신고는 가능함) 반입 전 검사가 어려워짐

- 기존의 예비 심사에서는 “검사 있음(구분3)”이 있는 경우, 예비신고 상태로 보세지역에 반입하기 전에 검사를 할 수 있었으나 “검사 실시에 지장이 없는 화물”, “적재 상황설명서와 매입명세서에 의해 화물의 내용이 명확”, “검사 완료 후, 확실하고 빠르게 보세지역으로 반입할 수 있음”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반입 전 검사를 할 수 없게 됨³⁴⁾
-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해야 하지만 특정 화물의 경우 세관의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반입하여 통관하며 필요 시 지정구역 외 검사신청을 하면 타 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함
- 수출통관을 위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불시 검사 또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NACCS를 통한 수출신고 후 물품검사는 간이심사(구분 1), 서류심사(구분 2), 화물검사(구분 3)으로 이루어짐
 - 간이심사는 전산상의 정보로 수출 허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며 서류 심사를 위해서는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함
- 검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보세구역)에서 이루어지나 세관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세관장은 화물의 성질이나 수량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장소 외 검사를 허가함

34) 나고야 세관 홈페이지 www.customs.go.jp/nagoya/english/ 2015. 2

나. 수출통관 관련 제도

1) 특정 수출 신고제도(特定輸出申告制度)³⁵⁾ (Authorized Exporters' Program)

-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출자(AEO 공인)는 화물이 위치한 장소나 선적예정 항구 혹은 공항의 관할 세관장에 수출신고 후 보세구역에 화물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음
 - 특정 수출자의 화물이 자사 공장이나 창고, 항구와 공항으로 이동 중이거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수출화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선적할 수 있으며 선적의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세관 심사 및 검사 시 수출업체의 보안 관리 및 규정 준수가 반영됨
- 단, 기타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기타 행정기관의 처분, 허가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한 화물은 보세구역 등의 지정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특정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
 - 특정 수출자로 승인을 받고 하는 기업은 최근 3년 간 관세법 혹은 기타 관세법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졌거나, 통고처분을 받지 않았어야 하고, 폭력 단원 등이 아니어야 함³⁶⁾
- 총포, 부속품·부분품과 폭발물, 화약류, 군용 선박·항공기·차량 등의 화물³⁷⁾과 이란, 이라크, 북한³⁸⁾을 목적지로 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특정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35) 일본 관세법 제67조의 3

36) 일본 관세법 제67조의 6

37) 일본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1의 1항

- 특정 수출신고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세관의 심사·검사에서 수출업체의 보안관리 및 규정준수가 반영되어 수출화물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탑재 가능하며 리드타임 및 물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2) 특정 위탁수출신고제도³⁹⁾

- 인정통관업자(認定通関業者)에 의한 통관과 특정 보세운송업자에 의한 화물 운송으로 적정한 화물 관리가 가능하여 양자에 의해 화물이 취급될 것을 전제로 보세구역 등에 화물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수출자 또는 대리인(인정통관업자 등)이 '특정 위탁수출신고 포괄 신청서(세관양식 C 제9160호)'를 작성하여 특정 위탁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관 관서에 제출하면 됨
- 인정통관업자는 반년에 1회, 특정 위탁수출신고에 따라 화물이 장치된 장소에서 화물 관리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조사 결과는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관 관서 및 환물 운송을 담당하는 특정 보세 운송업자에게 송부해야 함
 - 특정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자로부터 의뢰받은 특정 위탁수출신고 화물과 관련하여 인정통관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하여 운송화물과 신고화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 수출통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⁴⁰⁾

-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108조의 4에서 수출금지 화물의 수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을 제외한 금지물품을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함

38) 일본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4

39)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hozei/index.htm>, 2015. 2.

40) 정재호·김수영·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 수출금지 화물 중 마약을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함

- 일본은 금지품 수출입 행위를 밀수출입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음

- 수출금지 물품의 수출 실행에 착수하여 이를 마치지 못한 미수범에 대해서도 수출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예비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형을 부과하고 있음
 - 마약 수출을 예비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 마약 외 수출금지 물품 수출을 예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 수출입 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5. 캐나다

가. 수출통관 절차 개요

1) 수출신고⁴¹⁾

- 수출신고에 대한 사항은 관세법 95와 수출품 신고규정(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 및 MEMORANDUM D20-1-1에서 다루고 있음

- 수출신고 방식에는 사전인증을 통한 인터넷 수출통관, G7 EDI 및 수출신고서 양식 Form B13A를 제출하는 서면방식이 있음

41) 조미진, 『주요국의 통관제도: 캐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1

- CAED는 수출자동신고시스템으로서 사전에 인증받은 수출자 혹은 중개인이 개별 사업소에서 전산으로 수출신고하는 방식으로 통제 품목의 경우 CAED신고서 사본 및 수출허가서를 CBSA에 제출하면 됨
 - G7 EDI시스템은 G7국가 관세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수출신고를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통계청에 신청서(Form BDF158)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Form B13A를 사용하여 수출신고를 할 경우 1부는 세관에 제출하고 1부는 운송인에게 제공, 마지막 1부는 수출자가 보관해야 함
 - 신고서의 최신 버전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수출신고서에 6자리 도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수출신고증명번호(proof of report)로 사용됨
- 수출 서류를 미리 전자송부하지 않았을 시 지정세관에 수출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가 진행됨
- 수출신고는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미국을 제외한 기타국가로 수출하는 2가지로 나누어짐
- 미국과 캐나다 간 체결한 수입데이터 정보교환 양해각서(MOU)에 따라 일반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반 물품은 수출신고에서 면제됨
 - 단, 수출입 관리대상품목(controlled goods)의 경우 해당 품목의 가치에 상관없이 수출신고 대상이 됨
 - 수출품 신고규정 Section8에 따라 수출신고가 면제된 물품일지라도 합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세관 직원이 서면으로 수출신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미국을 제외한 기타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의 가치가 2천캐나다달러 이상이거나, 수출통제품, 캐나다를 출발하여 미국을 통과하여 제3국으로 운송되는 물품, 보세창고에서 수출되는 품목, 특정 비상업용 물품 등의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함
- 그 밖에 물품의 수리 및 추가 제조과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정한 비상업용 물품(2천 캐나다달러 이상) 기타 건축업자의 기계 및 설비기구, 샘플 및 리스품목들도 모두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수출허가서, 증명서 및 면허,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부처의 서류, 수출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수출신고는 수출자, 운송인, 통관 중개인, 화물 포워더 및 통관 서비스 제공자만이 할 수 있음⁴²⁾
 - 수출자는 캐나다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번호(BN)을 가지고 상업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임
 - 운송인이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출신고를 이행할 경우 유효한 운송인등록번호(Carrier Code)를 필요로 함
 - 운송인 중 수출품 신고규정 Section 13에 따라 CBSA와 MOU체결 시 수출신고가 면제되며 수출자는 해당 품목이 이미 CBSA에 신고된 품목임을 입증하는 수출신고 증명번호(proof of report)를 운송인에게 제공해야 함

- 수출신고는 지정된 세관(export reporting office)에서 이루어지며 물품이 수출되는 방식에 따라 수출신고 시기가 달리 적용되고 있음
 - 해상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물품이 선적되기 최소 48시간 이전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항공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물품 선적 최소 2시간 전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철로로 수출되는 품목은 물품이 선적된 열차가 조립되기 최소 2시간 전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타 다른 방식의 경우 수출 바로 이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함
 - 살아있는 동물, 벌크화물, 시간에 민감한 품목들의 경우, 수출 바로 직전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신고는 즉시 전산에 의해 수리되거나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물품 검사를 해야 할 경우 검사 후 수리됨

42) Customs Act Section 95

- 수출품 신고규정 Section 15에 따라 짐을 신지 않은 캐나다 군사 수송기기, 캐나다 국방부에서 수출하는 품목, 혈액, 장기 등의 응급상황에 따라 수출되는 품목 등에 한해 수출자의 구두신고가 허용되며 수출서류 및 허가서 등이 필요 없음

2) 물품검사

- 캐나다는 관세법(Customs Act) 99(1)(c)에서 수출품에 대한 물품검사 이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MEMORANDUM D20-1-1의 229에서 규정하고 있음
- MEMORANDUM D20-1-1에 따라 물품검사는 물품이 출항될 항구 또는 CBSA가 지정하는 세관(물품이 신고된 항구와 가까운 내륙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CBSA가 지정하는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항구 혹은 보세창고(일반적으로 CBSA의 통제를 받는 보세창고(Sufferance warehouse) 또는 보세시설(bonded facility)에서 검사가 이루어짐
- 세관이 수출신고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물품의 위험을 평가한 후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운송인(freight forwarder) 혹은 수출자(exporting carrier)는 요청한 세관이 요청한 기한 내에 물품을 보세창고로 운송해야 함
 - 물품검사 후 물품신고가 B13A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세관은 검사 실행 여부 항목에 스탬프 처리함
 - 만약 CAED 또는 G7 EDI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화물일 경우 화물의 검사 유무를 시스템에 입력함
- 세관은 물품이 CBSA에 신고된 이후 어떤 때라도 필요할 경우 물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해 이루어지는 디스터핑(destuffing) 비용은 모두 수출자가 부담함
- 캐나다는 세관원의 의무에 대해 관세법 제6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세관원이 수출물품이 불법 수출물로 의심될 시 언제 어디서든 물품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며 세관원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음

- 운송인 중 CBSA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을 경우 수출 신고가 면제되며 수출자는 CBSA 수출전 신고가 완료된 물품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증명번호(Proof of report)를 운송인에게 제공해야 함
 - 수출신고증명번호는 CAED시스템, G7 EDI시스템, 수출신고서 양식 B13A사용 시, 요약신고 시 등 신고방식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음

나. 수출통관 관련 제도

1) 요약 신고서 프로그램(Export Summary Reporting Program)

- 사전 승인된 수출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한 후 월별로 요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MEMORANDUM D20-1-1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수출 통제를 받지 않으며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low-risk) 수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물품은 벌크 물품이고 동종의(homogeneous) 화물이어야 하며, 수출자가 CBSA로부터 서면으로 해당 물품이 벌크 화물이자 동종의 화물인지에 대한 적격성을 확인 받았을 경우에 한해 월별 요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동종물품은 수송수단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박스나, 더미, 가방 등에 동봉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요약신고서 프로그램의 적용을 희망하는 수출자는 수출자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세관 혹은 수출이 진행될 곳과 가까운 세관에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역세관은 이를 검사한 후 CBSA 본부로 보내며 최종적인 확인을 받음
 - 세관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기록이 발견되거나, 지원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요약보고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는 물품(통제물품, 이중목적용 가지고 수출되는 정교한 전자기기 등)의 경우 승인이 보류됨

- 요약신고서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수출자는 수출 후 5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AMP가 부과됨

2) PIP(Partners in Protection)

- 캐나다는 AEO와 비슷한 제도로 PIP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경보안을 강화하고 세관의 법규준수에 대한 자각성 제고, 밀수출입 예방, 테러리즘 대응 등을 위해 무역거래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들 사이에 도입된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임
- 수출자를 비롯하여 수입자, 운송업자, 물류센터 직원, 포워드 등으로 재직하며 캐나다에서 무역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CBSA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신청가능함
 - PIP 참여자들은 화물처리시간 단축, 개선된 보안 수준 등의 혜택을 얻게 되며 캐나다와 미국 간에 공동으로 개발한 FAST Program을 비롯하여 CSA(Customs Self Assessment)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짐
- PIP 업체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맺은 미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수출통관 시 신뢰로운 업체(Trust Trade)로 간주되어 통관 신속 등의 이익을 얻게 됨

다. 수출통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1) 관세법 처벌⁴³⁾

- 캐나다는 관세법 제160조에서 수출 물품의 보고, 거짓 진술 등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식기소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경우 5만캐나다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하고 있음⁴⁴⁾

43) 정재호 외 2명,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 기소범죄로 처벌해야할 경우 5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고 규정함

- 밀수출의 경우 약식기소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경우 5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하고 있음
 - 기소범죄로 처벌해야 할 경우 5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고 규정함

- 허위 수출입 신고의 경우 약식기소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경우 5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고 있음
 - 기소범죄로 처벌해야 할 경우 5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고 규정함

- 그 밖에 금지품의 수출과 관련한 처벌규정은 관세법상 조항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음

- 형법에서 수출과 관련된 처벌 규정은 형법 제46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로 불법 마약사용을 위한 문헌 및 기구를 수출하였을 때 초범일 경우 1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함
 - 재범 혹은 지속적인 위반일 경우 3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함

2) AMPS(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 캐나다 세관은 수출 통관절차에 관련된 전 부문에 걸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통관규정에 대한 법률 준수를 높이기 위해 별도로 벌금제도를 마련하였음
 -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입 신고규정을 비롯하여 수출관련 D-memoranda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AMPS에 따라 민사벌금(civil penalty)이 부과됨

44) 조미진, 『주요국의 통관제도: 캐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1

- CRA에서 사업자번호(BN)을 받은 자, 회사의 수출입자, 4자리 운송인 등록번호를 CBSA로부터 발급 받은 자, 보세구역 운영자는 모두 AMPS의 대상이 됨⁴⁵⁾
- AMPS하에서 수출자가 관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세관은 일정 형식에 따라 벌금 부과 통보(NPA, Notice of Penalty Assessment)를 하며 단일 위법행위에 대해 최고 2만 5천캐나다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음
- 수출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세관이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수출자가 벌금 지불을 거부할 시에 수출품은 세관에 억류됨
 -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신고가 면제된 통제 품목에 대한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때 해당 품목의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됨
- 수출문제가 발생 시 기록이 누적되어 우범자에 대한 통관 절차상의 각종 편의 혜택을 박탈하며, 정밀 검사와 등의 감시 조치가 강화됨

6. 소결

-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수출제도를 간략히 비교해보면, <표 III-3>에 제시된 것처럼 요약될 수 있음
 - 수출단계에서 적재지에서 수출검사를 이행하는 방식을 도입한 국가는 조사대상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조사국 중 우리나라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신고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국 중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모두 보세구역 반입 전 수출신고를 허용하고 있음

45) 조미진, 『주요국의 통관제도: 캐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1

- 일본의 경우 지정 보세구역에 수출물품을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물류 원활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보세구역 반입 전에 수출신고를 허가함
 - 수출신고가 보세지역 등 화물 반입 전에 이루어지면 세관의 심사를 앞당겨 할 수 있게 되어 화물의 보세지역 등 반입에서 허가까지의 시간이 단축됨
 - 단, 부정 수출 및 소비세의 부정 환급 억제의 관점에 수출허가 및 화물 검사·허가의 경우 화물이 컨테이너 야드 등 보세지역 반입 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 허가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도 수입신고서에 표시한 후 관할 세관에 통지하면 보세지역 반입 전·후 모두 수출신고가 가능함

〈표 Ⅲ-3〉 수출제도 비교

	우리나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허용 여부	×	×	×	×	○ (보세구역 반입 전, 후 모두 허용)
적재지 검사 유무	○	×	×	×	×

- 다른 주요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EIS 및 ATS-AT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고위험 물품을 감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수출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음
- 제도적으로 보면, 교역안전과 관련된 수출통관제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수출검사제도(예: 적재지 검사)가 제도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반면, 불법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규제정책이 아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밀수출 등 불법수출 적발건수가 오히려 수출검사제도로 인해 더 증가한 것인지 등은 기초자료 미비로 인해 정확히 분석할 수 없었음

- 다만, 적재지 검사는 우범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주요국들의 관세법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표 III-4>에 제시된 것처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조사국 중 호주 및 캐나다는 법원 기소 여부가 처벌 수위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특히 호주의 경우 밀수출을 기소 여부뿐 아니라 tier1, tier2로 물품 범주 및 행위를 세 부적으로 나누어 처벌하는 특징을 보임
 - 미국과 캐나다는 모든 금지품 수출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관세법상 조항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보다 세분화시켜 처벌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강도 비교는 불가능함(예: 미국 내 총기류 반입 금지 및 처벌 조항의 경우 연방형법(18 U.S Code) 내 규정)
- 우리나라 허위신고죄에는 수출입 신고 시 품명·수량·가격 등의 사항을 허위신고한 자 등이 해당되어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국가별 허위신고(false declaration)로 표현된 죄목 내 세부 행위가 상이하여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남
-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조사국보다 수출 시 물품 검사 등에 제한을 많이 두는 편이나 밀수출의 경우 처벌 수위는 조사국 중 가장 낮은 편임
 - 특가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최대 총 4년의 징역이 부과되므로 제재 수위가 낮다고 할 수 있음
 - 물품에 따라 관세법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호주의 경우 tier2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 시 최대 10년까지 징역이 부과됨
 - 금지품 수출입죄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였으나 2014년 12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는 것으로 징역을 낮추고 벌금을 강화함
- 따라서 밀수출 등 불법수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수출진흥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

○ 현행 법령이 「자유무역지역관리법」, 「대외무역법」 등의 형량 수위에 맞춰, 2015년에 기존의 10년에서 7년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 결론적으로 불법수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에 비해 잘 정립된 현행 우리나라 수출검사제도를 유지하고, 불법수출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보다는 불법수출 관련 정보 구축을 토대로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장의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통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표 Ⅲ-4〉 관세법 처벌 규정 비교

	우리나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밀수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특가법 - 물품원가 5억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물품원가의 벌금 병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양자 병과	특정물품은 tier1(1000penalty units ¹⁾ 이하의 벌금과 5년의 징역 또는 양 자병과) tier2 (2500penalty units 이하의 벌금과 10년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로 나누어 처벌/ 법원에 통지하거나, 범죄 일에 법원에 기소되었을 시 a) 물품가치 산정이 가능할 시 물 품에 부과될 관세의 5배 이하 벌금 b) 물품가치에 해당하는 관세 산정 불가 시 1000penalty units ¹⁾ 벌 금 부과	(a)약식기소(summary conviction): CAD 5만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b)기소범죄 (indicable offense) 에 의한 처벌: CAD 50만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7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허위신고 ¹⁾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양자 병과	60penalty units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금지품 수출입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개별법	법원에 통지했거나 범죄가 발생한 시기에 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a) 물품가치 산정 가능 시 가치의 3배 이하, 1000 penalty units 이하 중 큰 금액의 벌금 (b) 물품가치에 해당하는 관세 산 정 불가 시 1000penalty units ¹⁾ 벌금 부과	개별법	(금지품 수출 행위를 밀수출 행위로 간주함)

주: 1) 1 penalty unit은 170호주달러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수출통관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역안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데 주목적이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출통관제도의 국제적 흐름에 맞게 신속통관을 기본 기조로 하되,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교역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수출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불법수출 증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법수출과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자료의 부족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함
- 또한, 주요국들의 관세범 처벌 규정을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밀수출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은 것이 특징이나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적,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불법수출에 대한 처벌 강화는 우리나라 수출진흥정책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처벌 수위를 조정하기보다는 현장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현장의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 소모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하여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함

- 따라서 향후 연구는 우리나라가 사전에 불법수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운영 현황과 불법수출 유형의 정보 구축을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장기적으로 불법수출 유형의 특징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수집과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적재지검사의 운영 효율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추가로, SAFE Framework 도입 후 선진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AEO 제도의 확대를 통해 수출통관의 무역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관세청, 『관세연감』, 2009.
- 김한성, 『주요국의 통관제도: 호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7.
- 성한경 · 이민선 · 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 미국』, 2014. 9.
- 송선욱, 「국제공급망 안전을 위한 세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5호, 2007.
- 이상엽 · 김수영 · 김미영, 『주요국의 통관제도: 일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 정재호 · 김미영 · 류태현, 『무역 원활화를 위한 한 · 중 FTA 통관규정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정재호 · 김수영 · 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 채봉규,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의 접점, 수출 적재지 검사」, 『관세행정 Focus』, Vol. 2, No. 5, 2012.
- 조미진, 『주요국의 통관제도: 캐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1.
- 한국관세물류협회,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도입을 통한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성 제고 방안」, 2010. 12.
- 한상현 · 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 수출 신고 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2010. 6.
- 우리나라 관세청, www.customs.go.kr/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0>
-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 캐나다 관세청, <http://www.cbsa-asfc.gc.ca/menu-eng.html>
- 캐나다 법률 정보 사이트,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

일본 관세청, <http://www.customs.go.jp>

일본 무역 진흥 기구, <http://www.jetro.go.jp/>

나고야 세관 홈페이지, www.customs.go.jp/nagoya/english/

미국 관세청, <http://www.cbp.gov/>

미국 상공 회의소, www.amchamkorea.org

호주 관세청, <http://customs.gov.au>

호주 법률 정보 사이트,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

호주 화물 위원회, <http://www.export.org.au>

관세연구 14-05

교역안전 제고를 위한 국제 수출통관제도의 동향 및 시사점

2014년 12월 23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강성훈 · 김미영 · 노영예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18-77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 (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69-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